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881호 2012. 4. 30(월)

# 포항시보

## ◀ 조 례 ▶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092호) ..... 2

## ◀ 규 칙 ▶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564호) ..... 8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565호) ..... 13

## ◀ 입법예고 ▶

○포항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10호) ..... 22

## ◀ 공 고 ▶

○제18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집회 (포항시의회 공고 제9호) ..... 27

회 람									
--------	--	--	--	--	--	--	--	--	--

**조 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30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조례 제1092호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1,960명” 을 “1,983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923명” 을 “1,946명” 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은 2012년 5월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개정으로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으로 전환은 일반직으로 임용 가능한 시점으로 한다.

②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수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수가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0호를 삭제한다.

##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 관련)

##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7.5% 이내	30% 이내	<u>25.5%</u> 이내	<u>9%</u> 이상

##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비 율	4.5% 이내	<u>14%</u> 이내	<u>22%</u> 이내	<u>59.5%</u> 이상

##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6% 이내	94% 이상

##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6급상당 이상	7급상당
비 율	40% 이내	60% 이상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청	읍면동
총 계	<u>1,983</u>	<u>631</u>	<u>37</u>	<u>211</u>	<u>260</u>	<u>312</u>	<u>532</u>
정무직 계	<u>1</u>	<u>1</u>	-	-	-	-	-
시 장	1	1	-	-	-	-	-
일반직 계	<u>1,648</u>	<u>520</u>	<u>29</u>	<u>157</u>	<u>164</u>	<u>274</u>	<u>504</u>
2 급	1	1	-	-	-	-	-
3 급	-	-	-	-	-	-	-
4 급	12	5	1	2	2	2	-
5 급	96	34	4	5	12	12	29
6급 이하 계	<u>1,539</u>	<u>480</u>	<u>24</u>	<u>150</u>	<u>150</u>	<u>260</u>	<u>475</u>
별정직 계	<u>3</u>	<u>1</u>	-	<u>1</u>	<u>1</u>	-	-
5급상당							
6급상당이하 계	<u>3</u>	<u>1</u>		<u>1</u>	<u>1</u>		
연구직 계	<u>5</u>	<u>2</u>	-	-	<u>3</u>	-	-
연구관							
연구사	<u>5</u>	<u>2</u>		-	<u>3</u>		
지도직 계	<u>40</u>	-	-	<u>40</u>	-	-	-
지도관	3	-	-	3	-	-	-
지도사	37	-	-	37	-	-	-
기능직 계	<u>286</u>	<u>107</u>	<u>8</u>	<u>13</u>	<u>92</u>	<u>38</u>	<u>28</u>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정원의 총수) 포항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1,960</u>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923</u>명</p> <p>2. (생 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1,983</u>명 -----</p> <p>1. ----- <u>1,946</u>명</p> <p>2. (현행과 같음)</p>

**1. 개정이유**

사회복지직 인력확충, 사무기능직 인력의 일반직 전환, 기능10급 폐지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960명 → 1,983명(+23명)**

- 일반직 : 1,600명 → 1,648명(+48명)
- 기능직 : 311명 → 286명(△25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

- 본청 : 623명 → 631명(+8명)
- 직속기관 : 210명 → 211명(+1명)
- 구청 : 306명 → 312명(+6명)
- 읍면동 : 524명 → 532명(+8명)

**다. 정원채정기준 조정**

○ 일반직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현행	1%이내	7%이내	27.5%이내	30%이내	24.5%이내	10%이상
개정	1%이내	7%이내	27.5%이내	30%이내	25.5%이내	9%이상
증감	-	-	-	-	증1%	△1%

○ 기능직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행	4.5%이내	13.5%이내	20%이내	34%이내	28%이상
개정	4.5%이내	14%이내	22%이내	59.5%이상	
증감	-	증0.5%	증2%	증25.5%	△28%

**라. 직급·직렬별 정원조정**

- 정부시책 추진에 따른 인력 증원(+23명)
  - 지자체 사회복지직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복지직 증원 : +20명
  - 주요현안사업 소요인력 증원 : +3명  
(주민 행정서비스강화 1명, 가축질병 방역 1명, 외국인주민 보호 1명)
- 사무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22명)
  - 기능9급 △22명 ⇒ 행정7급 +5명, 행정8급 +17명
- 자연감소인력 복지분야 재배치
  - 기능9급 △3명 ⇒ 행정·사회복지9급 +3명
-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정원조정
  - 기능 9급 100명 ⇒ 199명(+99명)
  - 기능10급 99명 ⇒ 0명(△99명)

**규 칙**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30일

포 항 시 장 박 승 호

포항시 규칙 제564호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계약직 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3조제2항** 중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사업소의 소장·과장의 직급(제48조제1항 관련)

사업소명	소장	과장	
		직위	직급
건설환경사업소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업무시설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하수도과장	지방시설사무관
		하수재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상수도사업소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수도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상수도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정수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사업소명	소장	과 장	
		직 위	직 급
시립도서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시립미술관	지방행정사무관		
서울사무소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여성문화회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공원관리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차량등록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b>제6조(감사담당관) ① (생 략)</b>  <u>〈신 설〉</u></p> <p>② (생 략)</p>	<p><b>제6조(감사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b>            ②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계약직 공무원 중 지방전일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b>제43조(하부조직) ① (생 략)</b>            ② 보건관리과장은 <u>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u> 또는 <u>지방간호사무관</u>으로 보한다.</p>	<p><b>제43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b>            ② 보건관리과장은 <u>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u> 또는 <u>지방간호사무관</u>으로 보한다.</p>

1. 개정이유

내부통제 내실화와 효율적인 감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방형직위 지정

- 임용직위 : 감사담당관
- 임용직급 : 일반직5급 또는 지방전임계약직 5호(5급 상당)

나. 직렬조정

- 상수도과장 : 환경+시설사무관 ⇒ 행정+환경+시설사무관
- 보건관리과장 :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사무관 ⇒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포항시 규칙 제565호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30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은 2012년 5월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의 개정으로 사무직렬 기능직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으로의 전환은 일반직으로 임용 가능한 시점으로 한다.

② 이 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수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수가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해소되어 결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신규채용을 금한다.

**1. 개정이유**

사회복지직 인력확충, 사무기능직 인력의 일반직 전환, 기능10급 폐지 등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1,960명 → 1,983명(+23명)**

- 일반 직 : 1,600명 → 1,648명(+48명)
- 기능 직 : 311명 → 286명(△25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

- 본 청 : 623명 → 631명(+8명)
- 직속기관 : 210명 → 211명(+1명)
- 구 청 : 306명 → 312명(+6명)
- 읍 면 동 : 524명 → 532명(+8명)

**다. 정원채정기준 조정**

○ 일반직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행	1%이내	7%이내	27.5%이내	30%이내	24.5%이내	10%이상
개 정	1%이내	7%이내	27.5%이내	30%이내	25.5%이내	9%이상
증 감	-	-	-	-	증1%	△1%

○ 기능직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 행	4.5%이내	13.5%이내	20%이내	34%이내	28%이상
개 정	4.5%이내	14%이내	22%이내	59.5%이상	
증 감	-	증0.5%	증2%	증25.5%	△28%

**라. 직급·직렬별 정원조정**

○ 정부시책 추진에 따른 인력 증원(+23명)

- 지자체 사회복지직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복지직 증원 : +20명
- 주요현안사업 소요인력 증원 : +3명

(주민 행정서비스강화 1명, 가축질병 방역 1명, 외국인주민 보호 1명)

○ 사무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22명)

- 기능9급 △22명 ⇒ 행정7급 +5명, 행정8급 +17명

○ 자연감소인력 복지분야 재배치

- 기능9급 △3명 ⇒ 행정·사회복지9급 +3명

○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정원조정

- 기능 9급 100명 ⇒ 199명(+99명)
- 기능10급 99명 ⇒ 0명(△99명)

##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표(제2조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b>총 계</b>		1,983	631	37	211	260	312	151	169	212
<b>정 무 직 계</b>		1	1	-	-	-	-	-	-	-
지방정무직		1	1	-	-	-	-	-	-	-
<b>별 정 직 계</b>		3	1	-	1	1	-	-	-	-
<b>6급상당 소 계</b>		1	1	-	-	-	-	-	-	-
지방별정직 6급 (비서)		1	1	-	-	-	-	-	-	-
<b>7급상당 소 계</b>		2	-	-	1	1	-	-	-	-
지방별정직 7급 (농기계교육교관)		1	-	-	1	-	-	-	-	-
지방별정직 7급 (여성교육강사)		1	-	-	-	1	-	-	-	-
<b>연 구 직 계</b>		5	2	-	-	3	-	-	-	-
지방학예연구사		1	1	-	-	-	-	-	-	-
지방보건연구사		1	-	-	-	1	-	-	-	-
지방환경연구사		2	-	-	-	2	-	-	-	-
지방기록연구사		1	1	-	-	-	-	-	-	-
<b>지 도 직 계</b>		40	-	-	40	-	-	-	-	-
<b>지 도 관 소 계</b>		3	-	-	3	-	-	-	-	-
지방농촌지도관		3	-	-	3	-	-	-	-	-
<b>지 도 사 소 계</b>		37	-	-	37	-	-	-	-	-
지방농촌지도사		37	-	-	37	-	-	-	-	-
<b>일 반 직 계</b>		1,648	520	29	157	164	274	135	157	212
<b>2 급 소 계</b>		1	1	-	-	-	-	-	-	-
지방이사관		1	1	-	-	-	-	-	-	-
<b>4 급 소 계</b>		12	5	1	2	2	2	-	-	-
지방서기관		1	-	1	-	-	-	-	-	-
지방기술서기관		2	-	-	2	-	-	-	-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9	5	-	-	2	2	-	-	-
<b>5 급 소 계</b>		96	34	4	5	12	12	4	10	15
지방행정사무관		10	4	3	-	1	2	-	-	-
지방시설사무관		4	3	-	-	1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3	3	-	-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1	-	-	-	1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1	-	-	-	1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2	-	-	2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9	12	1	-	2	4	-	-	-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1	1	-	-	-	-	-	-	-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1	-	-	-	2	-	-	-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1	-	-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1	-	-	-	1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8	4	-	-	2	-	-	-	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4	1	-	-	1	-	-	-	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1	-	-	1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	-	-	1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	-	-	-	-	-	-	3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2	-	-	-	-	-	1	1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5	-	-	-	-	2	-	3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	-	-	-	-	1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	-	-	1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5	2	-	-	-	-	-	1	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1	-	-	-	-	-	-	-	1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4	-	-	-	-	2	-	-	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2	-	-	-	-	-	-	-	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1	1	-	-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3	1	-	2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	-	-	-	-	-	-	1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1	-	-	-	-	-	-	1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2	-	-	-	-	-	1	1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2	-	-	-	-	-	1	1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	-	-	-	-	-	1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1	-	-	-	-	-	-	1	-
<b>6 급 소 계</b>		<b>434</b>	<b>159</b>	<b>6</b>	<b>33</b>	<b>48</b>	<b>70</b>	<b>39</b>	<b>47</b>	<b>32</b>
	지방행정주사	136	69	4	1	18	22	2	1	19
	지방세무주사	8	2	-	-	-	6	-	-	-
	지방사회복지주사	6	2	-	-	-	-	2	-	2
	지방전산주사	1	1	-	-	-	-	-	-	-
	지방공업주사	11	5	-	-	6	-	-	-	-
	지방농업주사	4	-	-	2	-	2	-	-	-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지방녹지주사		6	2	-	-	-	4	-	-	-
지방해양수산주사		2	2	-	-	-	-	-	-	-
지방보건주사		1	1	-	-	-	-	-	-	-
지방의료기술주사		1	-	-	1	-	-	-	-	-
지방보건진료주사		6	-	-	6	-	-	-	-	-
지방시설주사		47	20	-	-	9	14	4	-	-
지방통신주사		1	1	-	-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22	2	-	-	1	4	4	9	2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30	9	-	-	-	2	2	8	9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2	2	-	-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		5	-	-	-	5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9	8	-	-	1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30	-	-	3	1	-	6	20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		3	3	-	-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14	-	-	2	-	4	6	2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6	2	-	-	-	4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24	13	1	-	1	4	4	1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통신주사		1	1	-	-	-	-	-	-	-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2	2	-	-	-	-	-	-	-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3	-	-	-	3	-	-	-	-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4	3	-	-	1	-	-	-	-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	1	-	-	-	-	-	-	-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		4	-	-	-	-	4	-	-	-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	-	-	1	-	-	-	-	-
지방해양수산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	1	-	-	-	-	-	-	-
지방녹지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4	3	-	-	1	-	-	-	-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수의주사		4	-	-	3	-	-	1	-	-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10	-	-	10	-	-	-	-	-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2	-	-	2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4	-	-	-	-	-	3	1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1	1	-	-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		1	-	-	-	-	-	-	1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		6	-	-	-	-	-	2	4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3	-	-	-	-	-	3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	1	-	-	-	-	-	-	-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1	-	-	-	1	-	-	-	-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2	-	-	2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	1	-	-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1	-	1	-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1	1	-	-	-	-	-	-	-
<b>7급 소 계</b>		<b>483</b>	<b>168</b>	<b>8</b>	<b>54</b>	<b>53</b>	<b>94</b>	<b>32</b>	<b>39</b>	<b>35</b>
지방행정주사보		160	69	6	5	15	26	12	1	26
지방세무주사보		29	2	-	-	1	12	5	9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29	7	-	-	1	8	3	4	6
지방전산주사보		1	1	-	-	-	-	-	-	-
지방사서주사보		1	-	-	-	1	-	-	-	-
지방공업주사보		26	15	-	-	11	-	-	-	-
지방농업주사보		4	-	-	2	-	2	-	-	-
지방복지주사보		7	3	-	-	-	4	-	-	-
지방수의주사보		1	-	-	1	-	-	-	-	-
지방해양수산주사보		9	5	-	-	-	-	-	4	-
지방보건주사보		11	1	1	7	-	2	-	-	-
지방식품위생주사보		7	1	-	-	-	6	-	-	-
지방의료기술주사보		6	-	-	6	-	-	-	-	-
지방간호주사보		12	-	-	12	-	-	-	-	-
지방보건진료주사보		7	-	-	7	-	-	-	-	-
지방환경주사보		9	8	-	-	1	-	-	-	-
지방시설주사보		68	30	1	1	11	20	3	2	-
지방통신주사보		3	1	-	-	-	2	-	-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전산주사보		6	5	-	-	1	-	-	-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보		2	-	-	-	-	2	-	-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사서주사보		2	-	-	-	2	-	-	-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공업주사보		3	-	-	-	3	-	-	-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농업주사보		33	-	-	2	2	2	8	18	1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보건주사보		5	1	-	1	-	2	1	-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환경주사보		1	1	-	-	-	-	-	-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		12	7	-	-	1	2	-	-	2
지방전산주사보 또는 지방공업주사보		1	1	-	-	-	-	-	-	-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환경주사보		9	5	-	-	2	2	-	-	-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		2	2	-	-	-	-	-	-	-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보건주사보		2	1	-	-	1	-	-	-	-
지방환경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		1	1	-	-	-	-	-	-	-
지방농업주사보 또는 지방복지주사보		2	-	-	-	-	2	-	-	-
지방복지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		1	1	-	-	-	-	-	-	-
지방농업주사보 또는 지방수의주사보		5	-	-	4	-	-	-	1	-
지방보건주사보 또는 지방간호주사보		6	-	-	6	-	-	-	-	-
<b>8 급 소 계</b>		<b>413</b>	<b>115</b>	<b>10</b>	<b>56</b>	<b>41</b>	<b>61</b>	<b>38</b>	<b>27</b>	<b>65</b>
지방행정서기		157	39	8	2	11	22	11	7	57
지방세무서기		26	2	-	-	2	10	8	4	-
지방사회복지서기		26	7	-	-	-	6	1	4	8
지방전산서기		4	3	-	-	1	-	-	-	-
지방사서서기		2	-	-	-	2	-	-	-	-
지방공업서기		20	5	-	-	12	2	1	-	-
지방농업서기		4	-	-	2	-	-	1	1	-
지방복지서기		6	4	-	-	-	2	-	-	-
지방해양수산서기		5	2	-	-	-	-	2	1	-
지방보건서기		20	-	-	17	-	3	-	-	-
지방의료기술서기		10	-	-	10	-	-	-	-	-
지방간호서기		2	1	-	1	-	-	-	-	-
지방보건진료서기		10	-	-	10	-	-	-	-	-
지방환경서기		3	3	-	-	-	-	-	-	-
지방시설서기		58	30	-	-	8	12	5	3	-
지방통신서기		1	1	-	-	-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세무서기		1	1	-	-	-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전산서기		7	5	2	-	-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공업서기		1	1	-	-	-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농업서기		15	-	-	3	-	2	9	1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복지서기		1	1	-	-	-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해양수산서기		1	-	-	-	-	-	-	1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보건서기		9	3	-	-	1	-	-	5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환경서기		1	1	-	-	-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시설서기		2	1	-	-	1	-	-	-	-
지방전산서기 또는 지방통신서기		1	1	-	-	-	-	-	-	-
지방공업서기 또는 지방시설서기		2	2	-	-	-	-	-	-	-
지방공업서기 또는 지방통신서기		1	1	-	-	-	-	-	-	-
지방공업서기 또는 지방환경서기		4	1	-	-	3	-	-	-	-
지방농업서기 또는 지방수의서기		3	-	-	1	-	2	-	-	-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지방보건서기 또는 지방의료기술서기	2	-	-	2	-	-	-	-	-
	지방보건서기 또는 지방간호서기	8	-	-	8	-	-	-	-	-
	<b>9급 소 계</b>	<b>209</b>	<b>38</b>	<b>-</b>	<b>7</b>	<b>8</b>	<b>35</b>	<b>22</b>	<b>34</b>	<b>65</b>
	지방행정서기보	63	17	-	1	3	-	6	8	28
	지방세무서기보	32	-	-	-	-	12	8	12	-
	지방사회복지서기보	50	6	-	-	-	4	3	2	35
	지방전산서기보	2	2	-	-	-	-	-	-	-
	지방공업서기보	1	1	-	-	-	-	-	-	-
	지방농업서기보	7	-	-	-	-	-	2	5	-
	지방녹지서기보	4	1	-	-	1	2	-	-	-
	지방보건서기보	9	1	-	5	-	3	-	-	-
	지방환경서기보	2	-	-	-	-	2	-	-	-
	지방시설서기보	19	4	-	1	3	6	-	5	-
	지방통신서기보	3	3	-	-	-	-	-	-	-
	지방행정서기보 또는 지방사회복지서기보	7	-	-	-	-	2	3	-	2
	지방행정서기보 또는 지방전산서기보	3	2	-	-	1	-	-	-	-
	지방행정서기보 또는 지방시설서기보	5	1	-	-	-	2	-	2	-
	지방농업서기보 또는 지방수의서기보	2	-	-	-	-	2	-	-	-
	<b>기능직 계</b>	<b>286</b>	<b>107</b>	<b>8</b>	<b>13</b>	<b>92</b>	<b>38</b>	<b>16</b>	<b>12</b>	<b>-</b>
	<b>기능 6급 소 계</b>	<b>13</b>	<b>7</b>	<b>-</b>	<b>-</b>	<b>6</b>	<b>-</b>	<b>-</b>	<b>-</b>	<b>-</b>
	6급 지방전기장	3	1	-	-	2	-	-	-	-
	6급 지방기계장	3	-	-	-	3	-	-	-	-
	6급 지방운전장	3	3	-	-	-	-	-	-	-
	6급 지방선박항해장	1	1	-	-	-	-	-	-	-
	6급 지방사무실무장	3	2	-	-	1	-	-	-	-
	<b>기능 7급 소 계</b>	<b>39</b>	<b>23</b>	<b>-</b>	<b>1</b>	<b>10</b>	<b>4</b>	<b>1</b>	<b>-</b>	<b>-</b>
	7급 지방통신장	1	1	-	-	-	-	-	-	-
	7급 지방전기장	4	1	-	-	3	-	-	-	-
	7급 지방기계장	15	5	-	-	7	2	1	-	-
	7급 지방운전장	7	7	-	-	-	-	-	-	-
	7급 지방화공장	1	1	-	-	-	-	-	-	-
	7급 지방선박항해장	2	2	-	-	-	-	-	-	-
	7급 지방사무실무장	9	6	-	1	-	2	-	-	-
	<b>기능 8급 소 계</b>	<b>60</b>	<b>33</b>	<b>1</b>	<b>1</b>	<b>16</b>	<b>7</b>	<b>2</b>	<b>-</b>	<b>-</b>
	8급 지방건축원	3	1	-	-	-	2	-	-	-
	8급 지방통신원	2	2	-	-	-	-	-	-	-
	8급 지방전기원	4	-	-	-	4	-	-	-	-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8급 지방기계원		18	8	-	-	10	-	-	-	-
8급 지방열관리원		2	1	-	1	-	-	-	-	-
8급 지방운전원		15	9	-	-	1	4	1	-	-
8급 지방화공원		1	-	-	-	1	-	-	-	-
8급 지방선박기관원		1	1	-	-	-	-	-	-	-
8급 지방농림원		1	1	-	-	-	-	-	-	-
8급 지방사무실무원		10	8	1	-	-	1	-	-	-
8급 지방조무원		3	2	-	-	-	-	1	-	-
<b>기능 9급 소 계</b>		<b>174</b>	<b>44</b>	<b>7</b>	<b>11</b>	<b>60</b>	<b>27</b>	<b>13</b>	<b>12</b>	<b>-</b>
9급 지방통신원		2	1	1	-	-	-	-	-	-
9급 지방전화상담원		4	4	-	-	-	-	-	-	-
9급 지방전기원		8	1	-	-	7	-	-	-	-
9급 지방기계원		25	6	-	-	19	-	-	-	-
9급 지방열관리원		2	1	-	-	1	-	-	-	-
9급 지방선박항해원		1	1	-	-	-	-	-	-	-
9급 지방운전원		61	13	2	5	8	12	10	11	-
9급 지방화공원		2	-	-	-	2	-	-	-	-
9급 지방농림원		1	-	-	1	-	-	-	-	-
9급 지방위생원		2	1	-	-	1	-	-	-	-
9급 지방사무실무원		39	13	4	2	7	9	3	1	-
9급 지방조무원		6	-	-	1	3	2	-	-	-
9급 지방전화상담원 또는 9급 지방사무실무원		2	2	-	-	-	-	-	-	-
9급 지방전기원 또는 9급 지방위생원		2	-	-	-	2	-	-	-	-
9급 지방전기원 또는 9급 지방조무원		5	-	-	-	5	-	-	-	-
9급 지방기계원 또는 9급 지방열관리원		3	1	-	2	-	-	-	-	-
9급 지방기계원 또는 9급 지방위생원		2	-	-	-	2	-	-	-	-
9급 지방기계원 또는 9급 지방사무실무원		1	-	-	-	1	-	-	-	-

**입법예고**

포항시의회 공고 제2012 - 10호

**공 고**

포항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7일

포항시의회의장 이 상 구

## 포항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 관람석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함(안 제2조)

- “장애인” 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을 말함.
- “공연장” 이라 함은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연장 및 관람장을 말함.
- “최적관람석” 이라 함은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의 관람석을 말함.
- “장애인 보호자” 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함

다.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100분의 50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 장애인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공연장 등의 운영자 및 행사주관자는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함(안 제6조)

바.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에도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권장하여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사.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은 조례 시행 후 2년 이내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함(부칙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2. 5. 3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790-722)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270-5112, FAX 270-0222)



## 포항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체육관·운동장 중 시가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관람시설의 객석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연장 등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이동 편의시설)**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시설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운영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공연장등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제5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 고**

포항시의회 공고 제 9 호

**제18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7회 포항시  
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시 : 2012년 5월 14일(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포항시의회 본회의장

2012년 4월 27일

**포항시의회의장 이 상 구**